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05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노인에 대한 간병 급여화	3

I. 개요

1.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황정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 24.
- (3) 회 부 일 : 2025. 1.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각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

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인에 대한 간병 급여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2026. 1. 1.부터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대상 연령을 2027. 1. 1.부터 매년 1세씩 낮추어 2031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연령은 2027. 1. 1.부터는 그 연령에 1세를, 2028. 1. 1.부터는 2세를, 2029. 1. 1.부터는 3세를, 2030. 1. 1.부터는 4세를, 2031. 1. 1.부터는 5세를 각각 뺀 연령을 적용함.

나. 검토의견

-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이유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¹⁾하게 됨에 따라 간병비 부담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²⁾,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 전년 대비 상승률³⁾은 2020년 2.7%에서 2023년 9.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조의2⁴⁾에 근거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사 및 간병지원인력 등이 포괄적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⁵⁾

1)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2024. 12. 24.자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2023. 12. 21.

3)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통계청) : ('20) 2.7% → ('21) 6.8% → ('22) 9.2% → ('23) 9.3%

4)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는 2020년 162만명에서 2024년 264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용환자 수	1,625,488	1,944,493	2,041,684	2,466,537	2,646,663

자료: 보건복지부

- 2024년 전체 병원급 이상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51.4%로 나타나고 있으며, 병상 대비 참여율은 33.7%로 나타나고 있음.

<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24.12) >

(단위: 개소, 병상, %)

구분	기관			병상		
	참여대상	참여	참여율	참여대상	참여	참여율
계	1,515	779	51.4	246,456	83,079	33.7
상급종합병원	47	47	100	42,071	9,463	22.5
종합병원	324	283	87.3	95,628	41,886	43.8
병원	1,144	449	39.2	108,757	31,730	29.2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요양병원 환자 중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인건비를 지원(본인부담률 40~50%)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5)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의 일환으로 급여화하는 것으로, 사적 간병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 운영 간병서비스 현황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거법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 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입원서비스 제공	「의료법」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 의료 최고도·의료고도 아면서 장기요양1·2등급수준 환자	본인부담률 40~50% 전제, 간병비 인건비 지원	「보건의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지원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70세 이상(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간병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적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다만, 노인에 대한 간병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점이 있고, 급여화에 따라 간병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바, 간병의 급여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와 함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문제, 간병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한 간병을 보험급여에 추가하려는 취지이므로, 안 제51조의2제1항에서 “70세 이상” 대신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2026년에는 7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매년 1세씩 하향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⁶⁾,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⁷⁾이 발의되어 계류 중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8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4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5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05호)」

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료급여법」 소관)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소관)에 서는 위 개정안들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중간결과가 2024년 12월에 나오면 이를 보고받은 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적절한 간병지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선행적으로 간병 급여화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또한 간병 실태조사 및 간병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타당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적정 서비스 제공을

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83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01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98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0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73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12호)」

위해 노인에 대한 간병을 보험급여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원 중 간병을 보험급여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에 대한 시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강보험 재정여력을 고려한 재원조달방안, 서비스 대상 및 제공자, 유사제도 간 정합성, 급여 우선순위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대한의사협회

-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동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대책 등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을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간병문제 관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 등의 시범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503